

(사)한국성우협회 음성더빙출연표준계약서

콘텐츠 제작업을 영위하는 ○○○(이하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 라고 한다)와 ○○○(이하 ‘성우’ 라고 한다)은 ‘프로그램 ○○○’ 에 대한 음성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1. 계약의 내용

프로그램	제 목	프로그램	
	음성더빙 장르 (V 체크)	(애니메이션 창작 / 애니메이션 수입 / 외화 / 오디오 / 기타 (직접 기입 가능))	
	방송사/제작사		
	방송예정일	20xx년 x월 xx일부터 주 회 방송	
	출연횟수	xx 회	
지급내역	출 연 료	등 급	등급(회당 xxxx원)
		계약금액	원
	지급방법	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	
<p>*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,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촬영분에 대한 출연료는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* 상기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.</p> <p>* 촬영분의 수정이 발생할 경우 2회 이상은 해당 성우와 사전 합의를 하여 별도의 출연료를 추가 지급한다.</p> <p>* 방송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방송사의 미지급금 지불 동의서를 받아 출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단 출연료 미지불 시 성우는 미지급된 출연료의 수령권한을 (사)한국성우협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, 방송사(제작자)는 (사)한국성우협회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			

2. 권익 보호

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성우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, 성우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3. 계약 해지

- (1)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성우 000가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윤리적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, 해당 성우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- (2) 성우 000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- (3) 성우 000는 본 계약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서면통지로 출연료의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며, 서면통지 이후 2주일 이내에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4. 분쟁 해결

- (1)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와 ‘성우’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(2) 제1항에 따른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중의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

①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나 (사)한국성우협회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.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.

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(訴訟)

5. 기타 부속 합의 등

(1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와 ‘성우’ 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, 부속 합의가 작성된 경우 해당 부속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.

(2)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가 본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, 부속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와 ‘성우’ 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_____년 _____월 _____일

방송사 또는 제작사

소재지 :

상 호 :

사업자 번호 :

대표이사 : (인)

성 우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